

DDA(Doha Development Agenda) 환경협상동향과 환경분쟁 예방 방안*

조석홍 **

〈목 차〉

- I. 서론
- II.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출범배경
- III.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주요의제
- IV.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V. 환경분쟁 대응방안
- VI. 결론

* 이 논문은 2004. 2. 한국중재학회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 한국원자력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제학박사

I. 서론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과 같은 지구환경문제는 너무나 심각하여 어느 한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범 지구적 문제로 등장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화산됨에 따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최근에 체결된 국제환경협약들은 환경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경제활동을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규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엄격한 환경정책을 통한 일방적인 무역규제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업계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DDA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 일부 선진국들이 국내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비판세장벽화함에 따라 환경보호와 무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환경문제가 국제교역상 주요한 제약요인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환경문제는 기업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정책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 비중이 크고 환경관련 분야의 기술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환경입법조치 또는 다자간 협상에서 채택되는 국제환경협약에 규정된 무역제한 조치들이 우리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이미 우리의 무역 및 경제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의 국제적 논의 결과와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의 환경보호 정책강화 추세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리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강화될 선진제국들의 환경규제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II. DDA 환경협상 출범배경

1. 무역과 환경문제의 대두

1) 환경과 무역의 논의 배경

1980년대 중반이후 인류의 생존이 걸린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산업화의 가속으로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멸종 및 기후변화 등 지구규모의 대형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월경성 및 지구전체의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개별국가의 대응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역정책적인 수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환경과 무역간의 마찰발생 및 이에 따른 양자간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

개도국은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도입이 개도국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될 수 있고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세인 개도국과의 항구적인 발전격차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선진국은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수단은 직접적인 무역규제 수단으로부터 경제적인 수단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반면에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취해지는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마찰요인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선진국과 후진국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환경정책

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세, 국경세 조정, 관세경쟁, 배출거래권 및 환경보조금 등 일국의 환경정책은 수출국의 시장접근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

2. 주요기구들의 무역과 환경 논의 동향

1) UN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형성 및 무역과 환경문제간 연계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으로 1992년 Rio 선언에서 환경목적의 무역조치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방주의를 회피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의제21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에 합치되고 비교우위에 따라 환경과 무역은 상호 지지적이어야 하고 또 다자적 무역체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과 소득의 향상에 기여하고, 경제성장과 개선된 환경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한다는 점과 건전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무역의 지속적인 활동에 기여하며 적절한 환경정책의 지지를 받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OECD

1993년 6월 무역환경정책의 조화를 위한 절차적인 지침에서 각국 정부는 무역 및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행 과정에서 잠재적 이행당사자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 각국 정부는 무역 및 환경정책이 여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각국 정부는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정적 무역효과 제거를 위해 협력해야 하고, 각국들은 무역 및 환경 관련 분쟁발생의 경우 당사국은 환경적·무역적 및 과학적·전문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ISO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는 먼저 환경기술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여기서 국가간 환경요건의 차이가 새로운 무역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각국의 환경관련 규격의 조화를 추진하여 기업의 환경관리체계, 능력, 서비스, 활동성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환경경영 국제규범 제도(ISO14000)”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ISO 14000 시리즈로 환경영향체계, 환경감사, 환경라벨일, 환경성과평가, 수명주기평가, 제품환경기준, 용어 및 정의별 국제규격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ISO 14000 시리즈는 각 국가가 자동적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상 소비 및 생산패턴에 영향을 주어 무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제품자체보다도 생산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제품무관련 생산과정에 의한 무역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WTO 무역장벽협정(WTP/TBT)상 관련 규정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4) WTO

세계적인 협정과 기구를 갖춘 다자무역 체제를 구축하면서 WTO를 통해 국가간 무역분쟁과 마찰의 조정 및 각 개별국가의 자의적인 무역보복이나 무역장벽의 조치를 규제하였다. 특히 국제환경 규범은 포괄적인 법체계 및 관리조직 결여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 대응위주로 발전(약 800여개의 양자, 무역, 다자환경협약이 개별적으로 운영중)하여 왔으며 종합적인 분쟁해결 체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규범의 기본원칙은 먼저 예방원칙으로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발생가능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둘째 오염자 부담원칙으로 오염발생자가 환경 오염 피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면서 WTO에서의 무역과 환경문제 논의는 현재 DDA에서 계속 중이며 1996년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는 10개 의제를 검토한 뒤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e System)의 규범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권고문을 제출한 바 있다..

<표 1> WTO/CTE에서 논의중인 10개 의제

의제 1	환경협약(MEAs)상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MTS) 규정과의 관계
의제 2	국내 환경정책·조치와 무역체제와의 관계
의제 3	다자간 무역체제 규정과 (a) 환경 목적의 부과금·조세 (b) 기술규정, 표준, 환경마크, 포장 등 환경관련 요건과의 관계
의제 4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
의제 5	다자간 무역체제와 환경협약의 분쟁해결 체제
의제 6	환경조치와 시장접근, 무역왜곡조치 제거를 통한 환경이익
의제 7	국내판매금지물품의 수출문제
의제 8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환경
의제 9	서비스무역과 환경
의제 10	비정부간기구(NGO)의 참여문제 및 정보·자료 교류문제

3. 환경관련 무역분쟁 사례

1) GATT에서의 사례¹⁾

GATT체제(1948-1994년)중 제기된 분쟁을 살펴보면,

(i) 1982년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금지 사건,

1) 외교통상부. 2003. 12.

- (ii) 1988년 캐나다-가공되지 않은 청어 및 연어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
- (iii) 1990년 태국-담배의 수입 및 담배에 대한 내국세에 관한 제한 사건,
- (iv) 1991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한 사건(제1차 Tuna-Dolphin 사건)
- (v) 1994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한 사건(제2차 Tuna-Dolphin 사건)
- (vi) 1994년 미국-자동차에 대한 조세사건 등 6건이다.

2) WTO에서의 사례²⁾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들간에 WTO협정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가 급증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된 환경관련 무역분쟁을 살펴보면,

- (i) 1996년 미국-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표준 사건의 패널절차 및 상소절차
- (ii) EC-호르몬 사건
- (iii) 1998년 미국-일정한 새우 및 새우제품의 수입금지 사건의 패널절차 및 상소절차
- (iv) 위의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 판정 결과의 이행을 둘러싼 패널절차 및 상소절차사건
- (v)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의 패널절차 및 상소절차 등 5건이며, 상소절차를 별건으로 할 경우 9건에 달한다.

2) 외교통상부, 2003. 12.

4. 주요 국제환경협약

1) 국제환경협약 현황

현재 국제적으로 약 221개의 환경관련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해양분야 협약이 약 1/3으로 2003년 4월 현재 86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 45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등 미가입 협약에도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³⁾

<표 2> 국제환경협약 현황

구분	계	대기기후	담수보호	해양어업	생물보호	핵안전	유해물질	기타
채택	221	14	15	86	50	13	13	30

<표 3> 우리나라 가입 국제환경협약 현황

계	대기기후	담수보호	해양어업	생물보호	핵안전	유해물질	기타
45	7	-	17	7	6	1	7

2) 기후변화협약

이산화탄소 등 지구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대기중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홍수피해, 생태계 파괴 등의 지구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2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기상기구(WMO)주관으로 제1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

3) 학국 경제 신문. 2003. 10.

에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상반되어 이의 조정 및 실행을 위한 국제기구 및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년 3월 50개국 가입후 3개월 경과 규정에 따라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2003년 4월말 현재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3)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1974년 캘리포니아 대학 모리나(Molina)와 로우랜드(Rowland)박사가 염화불화탄소(CFC, 일명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과학잡지 “Nature”에 처음 발표하였고, 1985년에 ’57년이래 남극 오존층을 정기적으로 관측해 오던 영국 조사팀에 의해 남극의 오존층 파괴현상이 발견됨으로써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사용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오존층은 지표면에서 약 11km 고도에 걸친 부분을 대류권이라 하고 대류권 상층부에서 약 50km 고도까지를 성층권이라 하며 성층권 내의 25km 부근에 오존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를 오존층이라 하며, 오존층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자외선이 산소와 반응하여 오존을 형성하고 형성된 오존은 다시 산소로 분해되는 화학반응과정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4) 생물다양성협약

1600년대 이후 생물종의 멸종속도가 그 이전 과거화석으로 확인된 멸종속도보다 50-100배 빨라짐에 따라 생물다양성 감소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생태계 안정의 기반, 식량·의약품 등 인류복지를 위한 생물 다양성 보전 필요성과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으

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획득하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평히 배분할 것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권적 자원화 필요성 각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생물자원에 대한 생물종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와 생물종에 대한 이용국의 접근권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향후 생물종의 보유, 이용과 관련된 국제적인 권리·의무관계의 기반이 필요하다.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협약의 목적은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의 수출입국가들이 상호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1972년 6월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회의개최 결정, 1973년 2월 워싱턴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전권회의 개최, 채택(81개국 참가), 1975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83년 7월 9일 가입하여 같은해 10월 7일 협약이 발효(122번째)되었고, 2003년 4월 현재 161개 가입국이 있다.

III. DDA 환경협상 주요의제

1. 전반적인 논의동향

도하 각료회의 출범이전인 2000년 후반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무역·환경의제를 새로운 라운드의 협상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특히 다자무역시스템과 다자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A)의 관계, 환경마크(ecolabelling) 및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WTO 규범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도국은 EU의 주장은 개도국의 대 선진국 수출에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은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식품 등에 적용될 환경마크 및 사전예방원칙⁴⁾을 경계하여 개도국과 함께 반대하였다.

절충을 거듭한 끝에 EU는 “협상결과에 대한 사전적 예단이 없이 (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negotiations)”라는 문구를 삽입시키면서 농업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철폐(phasing out)에 동의하는 대신 환경의제의 일부를 협상의제로 채택하고 일부는 계속하여 검토한 다음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타협안에 동의하여 새로운 라운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의 출범이 있게 되었다. 이로써 EU는 새로운 라운드 협상에 포함하려던 무역·환경관련 의제를 모두 관철시키지는 못하였지만 환경의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하각료회의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WTO는 출범후 7년이 지난 2002년에 드디어 무역·환경관련 일부 의제에 대하여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도하 WTO 각료선언 본문에 반영된 주요 환경의제는 각각 세가지의 협상의제와 검토의제로 구분되며 <표 4>와 같이 요약되며, 협상의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형태로 협상을 완료하도록 결정하였다.

4)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처해야 하는 원칙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얼의정서 등 다수의 국제환경협약이 이에 근거하고 있다.

<표 4> DDA의 환경부문 협상 및 검토의제

구 분	내 용
협상의제	WTO 기존 규범과 MEA 특정무역의무(STO) 간의 관계 MEA사무국과 WTO위원회 간 정기적 정보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 환경관련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검토의제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TRIPS협정의 관련 규정 환경목적의 환경마크 요건

자료 : ICIE, 최낙균 · 김준동, 2003.12 의거 재작성

2. 주요 협상의제

① MEA와 WTO 규범간 관계

ME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무역조치와 무역증진을 목표로한 WTO 규범의 조화방안 모색이 협상목적인데 EU, 스위스, 일본은 MEA 상의 특정 무역조치는 WTO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자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호주 및 개도국들은 모든 MEA상의 무역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EU는 1차 회의에서 협상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협상대상 MEAs 및 무역조치를 확대할 의도로 제안서를 배포하여, 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기서 호주가 MEA상의 특정무역의무와 관련 WTO규범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환경보호를 빌미로 한 선진국의 부당한 수입규제를 방지하자는 기본입장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배제한 MEAs상 특정무역조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②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교환 절차 및

옵저버 자격부여 절차

MEAs와 WTO규범의 사전 마찰가능성을 줄이고자 관련기구간 정보교환, 옵저버 자격부여 등 절차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무역환경위원회가 일반이사회와는 별도로 옵저버 자격부여 및 문서공개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③ 환경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자유화

먼저 환경상품 정의 및 범위를 둘러싸고 회원국간 이견이 노출되었는데 EU는 환경친화적 공정 등도 고려하여 환경상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 우리나라 등은 최종용도를 기준으로 환경상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개도국들은 환경상품을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서비스 교역자유화는 2002년 2월 시작되어 1단계 협상(2000.2-2001.3)협상에서는 분류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며 여기서 EU, 호주 등 선진국들은 환경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인도 등 개도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EU의 제안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환경보호활동에 직접 관련된 핵심(환경)서비스와 연관서비스로 분리하여 핵심서비스는 환경서비스분야로 다루고 연관서비스는 해당서비스분야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7차 협상(2001.3)에서 모든 서비스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협상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고 1차 개방요구서 제출(2002.6.30)을 계기로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며 여기서 중국,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9개국에 양허요구서를 제출하고 EU, 미국, 호주 등 13개국으로부터 양허요구서를 접수하였다.

3. 검토의제

검토의제인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와 무역규제 및 왜곡

을 철폐·삭감하여 무역·환경·개발에 기여에서, 첫째,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로 인도, 쿠바 등 개도국은 선진국의 환경조치가 개도국의 선진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므로 개도국을 특별히 배려하고 개도국에 추가적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환경기준 설정은 해당국가의 고유 권리이며, 선진국의 환경조치가 반드시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높은 환경기준은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가져와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새로운 상품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접근기회를 향상시킨다는 입장인 것이다.

둘째 무역규제 및 왜곡을 철폐·삭감하여 무역·환경·개발에 기여로 보조금 감축 문제를 위주로, 농업, 수산, 에너지 분야 등 분야별로 논의가 진행되나 농업, 수산보조금은 각각 농업협상 및 규범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CTE에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농산물수출그룹은 케언즈그룹과 우리나라, 일본, EU 등 NTC그룹(비교역적관심그룹)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으며, 케언즈그룹은 농업보조금이 환경에 부정적효과를 미치므로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NTC그룹은 농업이 환경보전, 농촌의 활력유지,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협정에서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산에서 수산보조금 분야에서는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등 Fish Friends의 입장과 일본, 우리나라, 캐나다, EU 등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Fish Friends 국가들은 보조금지급이 자원고갈과 교역의 왜곡 등을 강조하고,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캐나다, EU, 우리나라, 일본 등은 수산자원 고갈과 수산보조금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보조금이 어선감척, 인공어초형성, 환경친화적 수산관리 등 긍정적 효과를 유발함을 강조하고 있다.

검토의제2인 환경목적을 위한 라벨링 요건에서 협상목표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사용되는 자발적/강제적 라벨링제도가 무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EU, 스위스 등은 자국의 라벨링 조치(NPRPPM에 기초한 라벨링, GMO 라벨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에코라벨링 개념 정의, 에코라벨링과 관련된 무역문제규명 및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향후조치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EU등의 라벨링 조치가 TBT협정에 위반되므로 협상이 아닌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으로 CTE에서의 라벨링논의가 TBT위원회와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규범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개도국들은 라벨링제도가 보호주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EU, 스위스의 WTO 규범개정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⁵⁾

우리나라는 환경라벨링이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환경라벨링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 회원국 라벨링제도와 세계적·지역적 표준과의 조화, 개별 회원국 라벨링간 상호인정,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토의제3인 지적재산권관련(TRIPs)협정 검토 주요쟁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협정(TRIPs)과 환경친화기술의 개발, 이전추진과의 관계인 다자간 환경협약, 특히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 CBD)과 TRIPs 협정과의 관계로서 유전자원 주권,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전통기술의 보호문제이다.

주요 토의내용은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TRIPs 협정의 본래취지는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가 IPR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와 균형을 이루는 것임에 대부분이 동의하였고, 환경친화 기술의 이전촉진을 위한 TRIPs 협정의 보완 필요성 문제(특

5)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DDA서비스협상동향 2003. 12.

히 Patents, Compulsory Licens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관련규정의 보완문제), 생물다양성협약성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유국의 권리를 TRIPs 협정에서 수용하는 방안 등이다.

한편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기술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TRIPs 협정이 기술이전에 관한 제반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어 협정개정에 소극적인 입장표명으로 양 협정이 상이한 목적과 관장분야로 인해 상호 충돌가능성이 없고 또한 이와 관련 구체적인 증거도 충분치 않으므로 TRIPs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특히 환경협약상 특정기술이 규제됨으로써 대체기술이 독점화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동 대체기술의 이전추진과 TRIPs 협정의 관련규정과의 관계 규명 필요성 제기(한국)와 유전자 변형 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특허문제로 생물공학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종교적인 부정적 효과를 고려, 일부 국가들은 TRIPs 협정에 의거 유전물질, *micro-organism* 등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이의 제기와 관련 일부국가는 불특허를 규정한 27조 2항 및 3항이 유전자 변형생물체 특허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장치임을 지적하고 윤리적, 도덕적 문제해결은 TRIPs 권한 밖의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⁶⁾

따라서 TRIPs 규정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는 선진국은 CBD와 TRIPs 협정간에는 불일치가 없음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 추가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개도국(특히 인도)은 토착 및 전통지식의 TRIPs 협정에의 수용 등을 위해 TRIPs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 KIEP, DDA 분야별 협상동향, 2003. 12.

IV.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국제환경협약이 주는 영향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 몬트리올의정서(CFC, 할론, 메틸브로마이드 등 규제)는 제조공정에 있어서 냉매, 세정제, 발포제로 CFC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전기, 냉동기기, 화학산업에 영향을 주고, 소화제인 할론, 살균제인 메틸브로마이드 등을 사용하는 관련산업의 원료수급 및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CO₂ 등 온실가스 규제)은 화석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 연료유 생산 및 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산업 등에 영향이 예상되고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의 주권행사로 인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약, 유전공학 안전성에 의한 무역규제 예상과 농업, 축산업, 의약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 CITES(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은 호골, 서각, 용담, 사향 등 규제로서 규제동식물을 약재로 사용하는 제약산업,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피혁산업, 화훼농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

2. 각국 환경정책이 주는 영향

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에 관한 정책(미국, EU 시행)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방지는 관련산업인 자동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경고 라벨부착 규칙(미국시행)은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CFC 경고라벨의 부착으로 관련산업은 반도체, 가전기계, 화학 등이다. 포장 쓰레기 규제법(독일 시행)은 생산자의 직접회수 및 재생 포장 재사용 쿼터 설정 등을 통해 쓰레기 오염방지가 주 내용으로 관련산업은 전업종이다.)

에너지세/탄소세(유럽 각국 시행)는 CO₂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여 에너지 사용억제로서 관련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석유, 화학 등이다. 또 환경마크제(선진 각국 시행)는 환경상품에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구매, 무공해 상품개발 유도를 하는 내용으로 관련산업은 전업종이다.

V. 환경분쟁 대응방안

1. 대외적 대응방안

1) 환경외교강화

우리나라는 비록 국민경제규모와 지표가 선진국권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보전의 능력과 기술 수준이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크게 넘어서지 않고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에 대해 환경관련 재정 및 기술지원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그러한 지원을 선진 여러 나라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각종 국제환경협약에서 개발도상국이 받을 수 있는 ‘환경면죄부’를 최대한 이용하고 또한 재정이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외교를 강화하고 환경협력을 긴밀히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환경정책강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정책은 대체로 그 정책방향과 여타 정책방향이

7) 우리나라는 Co₂ 발생량은 세계 11-12위 수준이지만 발생증가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조화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환경기준 설정 및 정책수립도 산업별 생산공정상의 특이성과는 합치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추진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점으로서는 오염물질배출자에 대한 지도단속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기술, 재정 등 여러 면에서 지원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정부에서는 환경관리정책의 방향을 이러한 문제점에 개선시키면서 환경관리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면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구체적 정책상의 조치로서는 환경관리정책에 비용·편익 분석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관리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접규제수단과 경제적 수단과의 조화로운 정책수단의 할당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규제방식을 농도규제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단속 처벌 중심의 환경관리정책을 계몽, 지도, 지원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3) 주조전환 촉진 및 산업환경육성

정부는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이산화탄소 다량배출업체에 대한 시설, 공정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석유화학 등 노동, 자원 및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중심에서 조립금속, 기계, 전기, 전자, 수송장비 등 기술, 지식 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신규설비투자에 대한 금융, 세계상의 지원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총 에너지 공급량대

비 대체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대내적 대응방안

1) 산업구조의 개편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간재 사용비율은 선진 여러나라에 비하여 엄청나게 높은 편이며, 중간재 가운데 에너지의 사용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방치한다면 제조업의 부가가치생산성은 낮은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산업의 국제비교우위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자원이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산업의 비중이 높은 테다가 이러한 산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에 걸쳐 제품생산라인의 비효율화가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초소재산업에서 자원이나 에너지를 대량투입하고 생산라인이 이것들에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파괴문제도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절약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즉 자원 및 에너지 낭비형 산업구조를 그 절약형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2)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최근 고도의 경제성장과 과도한 소비성향으로 에너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가 세계 11위(2002년 현재)의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제2위로 떠올랐으며 석유소비증가율은 세계 제1위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패턴의 특성은 일산화탄소(CO₂), 황산화물(SO_x), 질소산화물(NO_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다. 그 의존도는 82%이다. 이는 OECD의 화석연료의존도(평균) 65%나 일본의 70%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의 생산라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시킬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예컨대 절전형 전자제품이나 절전형 전기사용기기의 개발과 그 사용을 촉진시킬 경우 에너지 절약 효과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3)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환경기술개발을 통하여 현재 국제환경규제조치 대응방안으로 우선 가동 또는 설치계획중인 환경기초 시설에서의 자체기술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동중 문제점과 설치계획중인 시설의 외국의존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며 이를 중점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 됨으로써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기에 선진기술을 자기화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연구개발의 실용화가 아니라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업환경윤리제고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인 기업은 자연환경과 인간정착환경을 보존하고,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이 함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산공정을 그린화할 뿐 아니라 환경친화상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경영방침은 최근

선진 여러 나라의 기업에서 활발하게 채택되고 있다.

기업의 이러한 환경주의 경영이념에 따라 세계 유명한 기업들은 각각 기업경영이념에 환경보전을 재빨리 받아들이고, 그 구체적 경영목표를 세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정책수단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이 이러한 경영전략을 수립한 것은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지구환경 위기를 맞이하여 기업은 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고 사회와 공존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VII. 결론

오늘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환경규제가 점차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경제환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제환경협약들은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규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은 국내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비관세장벽화함에 따라 환경보호와 무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의 비중이 높고 환경관련분야의 기술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들이 채택하고 있는 일련의 무역규제들이 우리의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의 추세속에서 환경규제와 연계된 무역규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도 시급히 요구된다.

지금은 국제환경규제가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개선된 환경의식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파급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처한다면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선발주자로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의식의 변혁은 환

경문제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국제경제사회는 무한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경관련 무역의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구환경보전을 명목으로 시작될 환경규제조치는 어떤 형태로든 무역을 규제할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발개도국 또는 중진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를 국제무대에서 진정한 동조국을 찾을 수 없는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다른데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어 더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환경규제에 대한 논의들은 단기적으로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각종 무역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강화 및 국내환경보전의 계기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한택환 외, 환경과 경제론, 2003. 박영사.
- 과학기술정책기획본부, 지구환경문제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1992.
- 3.
- 김준한 · 유상희 · 안지철 · 최충규,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1993.
- 김준한 · 임기철 · 한택환 · 박원규 · 고동수 · 윤영민,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서울: 웅진출판사, 1994.
- 김준한, “지구환경문제와 통상질서”, 「지구환경문제와 새로운 국제질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2. 4.
- 김환석,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환경문제, 공간과 사회 제3호, 서울 : 한울, 1993.
- 김환석 · 홍성범 · 이영희, 세계경제의 장기파동과 신기술의 국제확산, 과학기술정책기획본부, 1992.
- 산업연구원, 「환경규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992. 8.
- 조석홍, 국제통상실무, 도서출판 두남, 2002.
- 조석홍, 국제통상론, 도서출판 두남, 2001.
- Transition to a sustainable society : a backcasting approach to modelling energy and ecology / Henk A. J. Mulder and Wouter Biesiot Northampton, MA : E. Elgar, 1998
- Enabling technology : disabled people, work, and new technology / Alan RoulstonePhiladelphia, PA : Open University Press, 1998
- Government and the food industry : economic and political effect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 edited by L. Tim Wallace, William R. Schroder

Boston : Kluwer Academic Publishers, c1997

○ 세계무역기구 : www.wto.org

- 무역과 환경(CTE) : 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envir_e.htm
- 도하개발아젠다 : www.wto.org/english/tratop_e/dda_e/dda_e.htm
- 마라케쉬협정 : 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hist2_e.htm

○ 국제표준화기구 환경 · 무역연관자료(ISO 14000 Series)

○ OECD 환경무역 자료 검색 : www.oecd.org/oecd/pages/documentredirection

○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 www.mofat.go.kr/ko/index.mof

○ 환경부

ABSTRACT

A Study on Trend of the DDA Environmental Negotiation and Measures to Settle Environmental Dispute

Seok-Hong Jo

It is a common and prevailing Construction that recent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earth's warmer climate and depletion of ozone layers can never be solved by the efforts of any one nation. That is wh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been held more often lately in order to discuss the matter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there has been increased tendency of using economic activities of any nation especially their international trades as mean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environment protection.

Furthermore, there is an ample possibility for the advanced countries to use the regulatory restrictions for environment protection as an another measure of none-tariff barrier against countries including Korea which has high dependence on international trade with not very high technological capability of environment protection.

Some of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ently moved toward the creation of a new system of international regulatory measures on world trade in the name of Environment Protection. They plan to impose strict control over the process and technology of production of good they are importing from other country.

However, ever though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measures, in a short term, could play a negative role on our trade capability, they

uld, in the long run, also play a role of helping hands if we
eefully work out positive countermeasures as a result of hand-working
overnment supported by industry and all the society as a whole.

Key Words : Trade, Regulatory, Environment, International,
Protection.